

# 인공지능기술인력센터 운영위원회 규정

□ 제정 : 2020. 7. 1.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(이하 “본교”) 인공지능기술인력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총장이 위촉한다.

② 위원장은 인공지능기술인력센터의 센터장이 된다.

③ 위원회는 본교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 및 교육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인력으로 구성한다.

**제3조(임기)**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**제4조(위원장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총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5조(회의 및 의결)**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1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2. 위원의 2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6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인공지능기술인력센터의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
2. 인공지능기술인력센터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3. 인공지능기술인력센터의 제반 프로그램 및 업무활동에 관한 사항
4. 인공지능기술인력센터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
5. 인공지능기술인력센터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6. 기타 인공지능기술인력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

**제7조(간사)**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.

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3-0-46 인공지능기술인력센터 운영위원회 규정

제8조(운영세칙)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·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